

발주처의 공사대금 선급금 지체 시 시공사의 지체상금 적용기간 제외: 전주지방법원 군

산지원 2024. 1. 25. 선고 2023가단53568 판결



(1)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: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0.1% - 발주처에서 시공사에게

지체상금 7400만원 청구

(2) 판결요지: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 지연 기간을 제외하고 시공사의 지체기간 x

지체상금율

(3)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

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,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

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, 수급인이 공사

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
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(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).

(4)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,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.

(5)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,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,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.

(6)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다14429, 14436 판결 등 참조)

첨부: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1. 25. 선고 2023가단53568 판결

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